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으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59.2%를,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를,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였음.¹⁾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 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금칙어(문자열 필터링)에 대한 정기적 보완 및 관리·감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청소년성보호법

1) 정현미·장명선·조진경·이기연·박숙란·김현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79~80쪽, 국가인권위원회(2016. 10.)

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함.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제13조제2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경로로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해당 정보의 게시·제안·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암시하는 문자·그림·사진·동영상·약어(略語)·은어(隱語) 등의 형태 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불문하고 간음·추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본 법률이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보호를 위한 특별법임을 고려한다면 해당 연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 이를 고려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시키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는 사실상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와 다름이 없고,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알선영업행위를 하는 자와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포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이 요구됨.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 유통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정보 제공과는 그 행위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각 행위의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검토하여 제안하는 바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²⁾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조장하여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음. 따라서 자신이 관리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제1항), 즉시 삭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발견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삭제가 아닌 ‘차단’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공할 것을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할

2) 편의상 채팅 애플리케이션만을 기재하였으나, 개정안 제17조의2 및 관련 시행령안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면 모두 적용됨.

수 있는 조치로 금칙어 관리가 있는데, 금칙어 관리의 경우 이용자는 약어나 문자열의 조합 등을 이용하여 쉽게 등록된 문자열을 우회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주로 비속어, 줄임말, 신조어 등이 사용되므로 지속적인 금칙어에 대한 관리와 업데이트가 요구됨. 금칙어 관리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경우 적극적 필터링³⁾을 요구하고 성인의 경우 소극적 필터링⁴⁾을 요구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 몰입과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⁵⁾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음.⁶⁾ 반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회원 가입 시

3) 관리자들이 허락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DB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그외엔 모두 차단하는 필터링 방식. 적법한 콘텐츠만 유통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4) 관리자들의 요청 등의 이유로 OSP가 필터링 되도록 설정해 놓은 파일에 대해서만 DB를 구축하여 필터링을 실시하는 것. 인식기술과 DB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필터링 성능이 영향을 받게 됨. 새로운 콘텐츠나 변형 파일에 대해서는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879호 일부개정 2011. 07. 21.) 개정이유 참조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실명, 연령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불법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며, 추후 성매매, 성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특정이 용이하도록 실명, 연령 확인, 본인 인증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17조제2항).⁷⁾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특별히 처벌 경고문구표시 의무를 규정한 것은 P2P, 웹하드 등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아동·

-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의 성매매 유인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위에 적시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와의 형평을 위하여 이용자들이 처벌 규정을 상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처벌 문구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⁹⁾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9) 2013. 9. 6. 발의, 의안번호 67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참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8조 몰수 및 추징).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금칙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완 및 관리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방안을 연구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각호 신설).

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그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1호).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의심되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금칙어 보완,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3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로그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4호).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의무를 규정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5호).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¹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

10) 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규정과 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규정이 모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택일되어야 함.

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시행령안 제3조의2 신설).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규정(안 제17조의2제5항, 시행령안 제4조제2항 신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

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안 제68조 몰수 및 추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신 설 >

	<u>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금칙어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 및 관리, 기술 제공</u> <u>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u> <u>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u>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신 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② (생 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
보 게시 행위 등) ①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
교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의 의미를 나타내
는 문자·그림·사진·동영상·약어
(略語)·은어(隱語)등 형태의 정
보를 포함한다.

②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설>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

----- 즉시 차단
하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 서비스(문자, 음성, 화상 등의 수단을 불문하고 이용자간의 의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¹¹⁾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제1항의 정보를 즉시 차단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

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²⁾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¹³⁾

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u>이용자간 대화화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u>¹⁴⁾
<u><신 설></u>	<u>제18조의2(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u><신 설></u>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u>

③ (생략) 제67조(과태료) ① <u>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⑤ (생략)	<u>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만,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 한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u>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u> ----- -----. ②~⑤ (현행과 같음)
	<u>< 신설 > 제8장 몰수 및 추징</u>
	<u>< 신설 ></u> <u>제68조(몰수 및 추징)</u> ① <u>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 ② <u>이 법에 의하여 몰수·추징된 금액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활 및 생계를 위해</u>

	<u>사용하도록 한다.</u>
--	------------------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u>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 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정보 발견을 위한 조치 등) ① <u>법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를</u>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u>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1. 이용자가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를</u>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참조한 조문으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되, 어려울 경우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 반영 가능
- 12)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참조
-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참조
- 14)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참조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u>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 또는 제17조의2 제1항 정보를</u>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3. <u>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화</u> 중에서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u> 제한 할 수 있는 <u>금칙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u> 바에 따라 보완, 관리하는 조치 4. <u>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접속 또는 사용한 기록을</u>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조치 5. <u>이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경우</u>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때 취할 조치
---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u>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을 발견하고 <u>삭제</u>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로</u>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u>를 발견하고 <u>차단·삭제</u>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u>제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화서비스 이용</u>
---	--

제4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u><신 설></u>	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대화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¹⁵⁾ 제4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5¹⁶⁾와 같다.
---	--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참조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는 별표 1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